

신용거래약관

2002.	11.	11.	제정
2003.	1.	8.	개정
2004.	6.	10.	개정
2005.	9.	20.	개정
2007.	2.	1.	개정
2007.	12.	1.	개정
2009.	2.	4.	개정
2009.	9.	1.	개정
2009.	11.	16.	개정
2011.	10.	20.	개정
2011.	12.	1.	개정
2012.	4.	16.	개정
2012.	9.	10.	개정
2013.	7.	9.	개정
2014.	4.	14.	개정
2014.	7.	11.	개정
2015.	3.	4.	개정
2016.	3.	16.	개정
2016.	5.	30.	개정
2016.	7.	5.	개정
2016.	8.	26.	개정
2016.	11.	1.	개정
2017.	7.	11.	개정
2018.	5.	11.	개정
2018.	8.	24.	개정
2019.	3.	29.	개정
2019.	5.	30.	개정
2019.	6.	10.	개정
2019.	9.	30.	개정
2020.	11.	23.	개정
2021.	05.	03.	개정
2021.	09.	30.	개정
2021.	11.	01.	개정
2022.	02.	03.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 ③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용거래용자”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 5. “대용증권”이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제5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용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식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용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용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용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등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응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응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용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제8조(담보관리)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응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식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용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

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용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용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신용거래용자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가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가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3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식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0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0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0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8 및 10, 윤년 적용)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7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8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8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9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9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9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21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21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의 시행은 2022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한도는 다음과 같다.

o. 신용거래용자 한도는 다음 <표1>의 담보종목 등급별 ‘개별차주한도’에 따른다.

<표1> 신용거래용자 내부평가기준 : 담보종목 등급별 대출비율 및 담보유지비율

등급	평가점수	개별차주한도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종목별 총 대출한도
S	66~80	50억원	40%	140%	시가총액 5%
A	61~65	50억원	40%	140%	시가총액 5%
B	56~60	25억원	45%	150%	Min(시가총액 5%, 100억원)
C	51~55	25억원	50%	150%	Min(시가총액 5%, 100억원)
D	46~50	4억원	55%	170%	Min(시가총액 5%, 30억원)
E	36~45	1.5억원	55%	170%	Min(시가총액 5%, 20억원)
F	~35	대출불가			

o. 신용거래대주 한도는 다음 <표2>의 투자자별 ‘차입한도’에 따른다.

<표2> 신용거래대주 한도

구 분		요 건	차입한도
일반투자자	초기투자자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3,000만원
	경험투자자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투자자	7,000만원
	성숙투자자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투자자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1억원
전문투자자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1억원

2. 제5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o. 신용거래용자의 보증금률은 <별첨>1 <표1>의 ‘보증금률’을 말하며, 고객유형에 따른 현금과 대용증권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공격형 : 현금 1%, 대용증권(보증금률-현금 보증금률)
- 중립형 : 현금 20%, 대용증권(보증금률-현금 보증금률)
- 안정형 : 현금(=보증금율)

- o. 신용거래대주의 보증금률은 다음과 같다.
 - 신용거래대주 보증금률 : 100%(현금 또는 대용증권)
- o. 계좌의 보증금률은 신용거래용자 보유종목 등급에 따른 보증금률과 신용거래대주 보증금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3. 제6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o. 신용거래용자의 경우 90일(결제일 기준)로 함. 단, 90일 단위 연장, 최대 360일
- o.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90일(결제일 기준)로 함. 단, 90일 단위 연장, 최대 360일
- o.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함.
- ※ 만기일 연장신청 시점에서 ‘신용불가종목’으로 바뀐 경우에는 만기연장 불가함.

4. 제7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 o. 신용거래용자에 대한 담보유지비율은 <별첨>1 <표>의 ‘담보유지비율’을 말한다.
- o. 신용거래대주에 대한 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 신용거래대주 담보유지비율 : 140%
- o. 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금액과 증권담보용자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o. 담보유지비율 계산식

$$\frac{[\text{현금} + (\text{부담보주식} \times \text{당일종가}) + (\text{원담보주식} \times \text{당일종가}) + \text{신용대주담보금}]}{[\text{신용거래용자금} + \text{예탁증권담보용자금} + (\text{대주주식수} \times \text{당일종가})]} \times 100 \geq \text{담보유지비율}$$

5. 제7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o. 추가담보제공요구일(매매체결일 기준) 익영업일까지로 함.

6. 제10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o.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7. 제10조 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frac{[\text{기준가격} \times (\text{보유수량} - X)]}{[\text{신용공여잔고} - (\text{매도가격}^{1)} \times X]} = \text{담보유지비율}$$

$$\text{주식처분수량}[X] = \frac{(\text{신용공여잔고}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text{전일 증가}) \times \text{보유수량}}{(\text{매도가격}^{1)}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text{전일 증가})}$$

- 1) 매도가격 : 전일 증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하한가)
- 2) 상기 계산식에는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 미포함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예시]

<예시>

- 투자원금 450만원, 신용융자금 55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D일 장중	10,000원	10,000,000원	181%	
D일 장마감	8,500원	8,500,000원	154%	
D+ 1일	7,600원	7,600,000원	138%	추가담보 납부 요구
D+ 2일	7,500원	7,500,000원	136%	추가담보미납(20만원 담보부족)
D+ 3일 (반대매매)	5,250원	5,250,000원		추가납부(25만원) 필요
	매도가격을 전일 증가(7,500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5,250원)으로 산정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하였으나, 신용융자금 5,500,000원 대비 250,000원 부족 부족금액 250,000원 추가납부 필요			

-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이상으로 되는 경우 부족금액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나. 신용융자금 미상환시 임의상환(반대매매)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신용융자금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반대매매) 수량산정]

<예시>

- 투자원금 450만원, 신용융자금 55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 고
만기일	12,000원	12,000,000원	218%	
D+ 1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30%인 8,400원으로 할 경우, 신용융자금인 550만원(5,500,000/8,400=655)을 상환을 위해 655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2)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 고
만기일	5,000원	5,000,000원	90%	
D+ 1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30%인 3,500원으로 할 경우, 신용융자금인 550만원 (5,500,000/3,500=1,572)상환을 위해 1,000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00만원을 추가 납부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이상으로 되는 경우 부족금액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8. 제10조 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o. 임의상환시 상환할 신용거래 순서는 신용거래융자 중 유통융자, 신용거래융자 중 자기융자, 증권담보융자, 신용거래대주의 순서로 함.
- o. 임의상환을 위한 반대매매시 대상종목의 선정은 대출일자, 종목번호가 빠른 순서로 결정함.

9. 제10조 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o. 임의상환을 위한 반대매매일 오전8시 30분까지로 함.

10. 제11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o.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당사 홈페이지(www.sangsinib.com) [신용/대출 > 신용거래융자 > 내부평가기준] <표>의 담보종목 등급별 ‘이자율(체차)’ 를 말하며, 대출기간에 따라 기간별 체차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7일 이내 : 대출금리(담보종목등급에 따른 기준 대출금리)
 - ② 15일 이내 : 대출금리 + 0.45%
 - ③ 30일 이내 : 대출금리 + 0.9%
 - ④ 60일 이내 : 대출금리 + 1.35%
 - ⑤ 90일 이내 : 대출금리 + 1.8%
 - ⑥ 180일 이내 : 대출금리 + 2.25%
 - ⑦ 180일 초과 : 대출금리 + 2.7%
- (단, 기간에 따른 금리증가 상한선은 9.9%로 적용)

o. 이자적용방식 : 체차법

☞ 체차법이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말함. 예를 들면 기간이 90일인 경우 15일까지는 7%, 16일~30일까지는 8%, 31일~60일까지는 9%, 61일~90일까지는 10%를 적용하여 합산으로 이자 계산

※ 이자계산 기간 : 보통년 365일, 윤년 366일 적용

o. 신용거래대주에 대한 이자율은 당사 홈페이지(www.sangsanginib.com) [신용/대출 > 신용거래대주 > 3. 거래조건] <표>의 '신용거래대주 이자율' 을 말하며, 대출기간에 따라 기간별 체차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o. 대주매각대금에 대한 이용료율은 당사 홈페이지(www.sangsanginib.com) [신용/대출 > 신용거래대주 > 3. 거래조건] <표>의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을 말한다.

11. 제11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o.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o. 수시 : 상환 시

12. 제11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o. 연체이자 = 신용연체금 * 연체기간/365 * 연체이율
 - o. 연체이율 : MIN(약정이율+ 3%, 12%)
- ※ 이자계산 기간 : 보통년 365일, 윤년 366일 적용

13.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o. 연체이자 = 고객에 대한 미반환금액 * 연체기간/365 * 연체이율
 - o. 연체이율 : 12%
- ※ 이자계산 기간 : 보통년 365일, 윤년 366일 적용

14.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에 대해 임의처분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에 따라 당사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별첨 5> 제1항 또는 제2항의 일반수수료를 적용하며, 해당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sangsanginib.com) [온라인창구 > 서비스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안내] 에 게시한다.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용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5영업일에 지급한다.

[산식]

-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 담보활용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

[예시]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담보활용주식수	지급수수료
A고객	100주	1,000원
B고객	200주	2,000원
C고객	300주	3,000원
합계		6,000원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조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